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서식] <개정 2020. 9. 11.>

인체유래물은행 [ ]휴업 [ ]폐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기관	기관명	전화번호
	기관장 성명	
	소재지	

인체 유래물은행	허가번호	전화번호
	은행명	
	은행장 성명	
	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	폐업 연월일 년 월 일	
	휴업·폐업 사유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처리계획서 2.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3.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(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처리
신고인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